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587
주제와 관련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044) 200-4330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



1. 현황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련 증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22조는 행정제재나 형사고발을 면제·감경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를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해당 요건 및 감면의 정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신고하는 ‘자진신고자’와 조사 이후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는 ‘조사협조자’를 구분하여 전자, 후자 모두 1순위자는 과징금 등의 전액 면제, 2순위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2. 문제점

-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담합의 참여와 실행을 강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제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합의 생성과 지속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담합 주도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14) 1997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담합 주도자와 강요자 모두에게 감면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주도자, 강요자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2007년 개정을 통해 다시 강요자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도’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이었음. 이후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큰 업계 선도업체인 경우가 많은 담합 주도자가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처벌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담합 강요자 못지않게 주도자도 담합의 형성과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합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주도자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담합을 주도·성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후 가장 먼저 신고하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므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1순위자에게는 완전 면책, 2순위자에게는 50%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순위만으로 제재 감면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담합 참여자들이 조사 개시 이전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만들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담합 주도자에게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주도성’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에 있어 공정위의 재량 판단 여지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그 개념을 가능한 좁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도자들은 통상 담합 사실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에 유용할 수 있으나 주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되면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임
 - 단순히 모임을 주선하는 정도가 아닌 담합의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 주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주도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주도자 입장에서 담합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유인이 생겨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을 조기에 적발한다는 등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도자에 대해서는 1순위자라 하더라도 완전 면책이 아닌 부분 감경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공정위의 담합 조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사 개시 이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의 범위를 현행 규정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조사 개시 이후에도 기업들의 조사 협조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 폭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587
주제와 관련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044) 200-4533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1. 현황

-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함
 - 지주회사 자신은 자본 조달과 주식 매입을 통해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자회사는 구체적인 사업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
 -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로 확장되는 체제로, 출자구조가 복잡적으로 얽혀 있는 순환출자 형태에 비해 지배구조 파악이 용이하여 공정위는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¹⁵⁾ 시에는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대한 최소 지분을 요건이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 요건 등을 규정하여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수직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15)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되므로(법 제2조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공정위에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공정거래법」상 각종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됨.

-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20%, 비상장회사의 경우 40%라는 최소 지분율 요건을 두고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의 지나친 수직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손자회사→증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의 운영에 있어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보험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기업집단 내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창구가 되는 등 자금고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음

2. 문제점

- 현행법과 같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다른 국내 투자자¹⁶⁾와 합작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어발식 지배구조 확장이 아닌 정당한 주요사업 분야의 확장도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음
 -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은 수직적 구조 중 어느 출자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출자의 상위단계(자회사)에서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하위단계(손자회사 이하)로 갈수록 전문화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합작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자회사 단계로 올라가 합작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구조와 사업전략을 편성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됨
- 현실적으로 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금산복합구조로 이루어진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
 - 기존의 금융, 비금융회사 간 소유지분을 처분하고 새로 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들의 지분을 매입하여 최소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업집단 입

16) 2014.1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공정위의 사전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고도 외국 투자자와 합작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특례 규정을 두었음.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국내 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증손회사 설립만 금지되고 있음

장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됨

3. 개선방안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2015,6월) 당시 ▲증손회사의 지분을 요건 완화 및 ▲금산분리 요건 완화(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방안을 추진하여 기업집단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음¹⁷⁾
- 기업집단의 사업다각화가 보편화된 우리 경영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회사 단계에서는 여러 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손자회사 이하 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행법상 증손회사에 대해 100% 지분율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손자회사가 사업연관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지분율 요건을 완화할 경우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간 '사업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두는 등 수직적 지배구조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법」은 과거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사업관련성 요건을 두고 있었으나 2004년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신설된 이후 2007년 동 요건을 폐지한 바 있음
- 또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을 감소시켜주면서 금산분리의 완화에 따른 제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정위에서 주요 입법 현안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금산분리 약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정 요건(금융자회사의 수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일반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다시 금융·보험손자회사나 증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¹⁸⁾

17) 각주 5, p.5.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901994, 2012.9.26. 발의.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587
주제와 관련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044) 200-4330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1. 현황

- TV홈쇼핑사업 진출이 정부의 엄격한 승인제로 운영됨에 따라 1995년 CS홈쇼핑, CJ오쇼핑, 2001년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그리고 2011년 홈앤쇼핑, 2015년 공영홈쇼핑 등 총 7개 사업자만이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TV홈쇼핑시장은 7개 사업자로 이루어진 과점시장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진입규제로 인한 과점시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TV홈쇼핑사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가격·거래조건 등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2015.2.11일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공정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3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TV홈쇼핑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¹⁹⁾
 - 3개 관련 부처 협업은 구체적으로 ▲중기청이 11개 소속 지방청을 통해 납품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수시로 접수하면,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 결과를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함

19)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 가동」, 『보도참고자료』, 2015.2.11.

2. 문제점

- TV홈쇼핑업체는 납품업자들에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TV홈쇼핑업체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지급하는 높은 송출수수료(채널 사용료)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TV홈쇼핑업체들은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방송 채널의 사이 또는 인접한 채널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며, SO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채널 편성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있어 SO는 TV홈쇼핑업체들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케이블TV SO들 사이에 가입자(시청자)를 저가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TV홈쇼핑업체들에게 부과하는 송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음²⁰⁾
- 그 외에도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²¹⁾ 결과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서면 계약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 발주하는 행위,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판매전문가·모델비·세트제작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특정한 택배회사·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납품업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정위는 2013.5.31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여 ARS 할인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키지 못 하도록 하고,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판매전문가·세트제작 등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단, 납품업자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3. 개선방안

- TV홈쇼핑업체가 SO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와 납품업자에게 수취하는 판매수수료 간의 연관성 및 위·수탁거래의 사용 등 다른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등)와 차별화된 TV홈쇼핑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²²⁾

20) 케이블TV SO의 매출액에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1.5%(49.0%인 방송수신료에 이어 2번째 주 수입원에 이를 만큼 높아져 왔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2014.11.).

21)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전가·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에 특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2013.12.10.

- ‘위·수탁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면서 상품판매 후 일정액이나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유형임(「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6호)
- 위·수탁 거래에서는 TV홈쇼핑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은 납품업자에게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남은 재고 상품의 소유권 역시 납품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직매입 거래(대형마트의 주 거래유형)나 특약매입 거래(백화점의 주 거래유형)와의 차이가 있음
- 이러한 거래형태에서는 TV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로 하여금 재고 상품을 수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납품업자 역시 원래 자신의 소유인 재고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재고 물량의 반품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권리가 아닌 양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성격을 지니게 됨
 - 이에 반해, 백화점이 주로 이용하는 특약매입 거래에서는 반품조건부 외상매입이라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인해 백화점이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에 대한 책임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형태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심사지침 제정이 있어야 될 것임
- 추가적으로 방송과 유통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TV홈쇼핑의 특성을 감안하여, TV홈쇼핑 사업자의 사업 허가기간 만료 후 미래부가 채승인 심사를 함에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제재 받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부처 간 공조가 최근 시행되었으므로²³⁾, 향후 이를 법제화하고 심사 시 고려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방송법」 제17조상으로도 TV홈쇼핑 사업자의 사업 허가 채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및 정도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02) 788-4587
주제와 관련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044) 200-4616

22)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2015.6.17., p.18.

23) 전게서, p.8.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문제



1. 현황

- 가계부채(가계대출+가계신용)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 1,099조 3,357억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말의 464조 712억원에 비하면 10여년 동안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 이 중 가계대출은 1,040조 3,519억원이며, 판매신용은 58조 9,838억원임
 - 2002년 말부터 2015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하고 있음
 - 예금취급기관에 의한 가계대출은 2015.4월 말 기준 765조 2,408억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77조 8,452억원으로 총 대출금 중 62.4%를 차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향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소득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임
 -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기조로 전환되는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성장의 고착과 고령화의 심화로 지속될 수 있음
 - 오히려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음

3. 개선방안

- ‘가계부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현재의 가계부채는 매우 상이한 두가지 부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함
 - 먼저,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는 계층이 살 집을 마련하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부채가 있음
 - 또 다른 가계부채는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이 빌리는 생계형 가계부채임
 - 상대적으로 이 가계부채는 부족한 생계비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자산가격의 급락 없이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더욱이 만약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채무자들이 부채를 줄이도록 하려면 부채상환의 기본적 자원인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임
 - 가계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설령 가계의 부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더라도 그에 따른 잠재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차입자의 부채상환능력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여, 상환능력에 부합한 정도의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정대출 규제가 확립되는 것이 급선무임
 -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적격담보대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건전성규제수단만으로는 금융불안정성에 취약한 단기,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기에 가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금융정책과 자금시장과	02) 2156-9710 044) 215-2750



국내 공제회 운영 개선 필요



1. 현황

- 공제회란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함
 - 현재 국내에는 약 90개의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공제회는 회원 등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2. 문제점

- 이들 공제회 중 상당수가 상급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미흡,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전문성 부족, 지배구조가 가진 문제점 등으로 인해 부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제회들에 대한 감독권한이 각 소관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공제회가 해당 부처의 낙하산 인사자리로 활용되고 있고, 각 부처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부족해 소관부처의 감독기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이자급여를 받는 회원들이 자산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는 지배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큼
-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소관부처에의 공동 검사요구권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부처들의 반발로 작업이 지연되어 왔음
 - 참고로 금년 6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부처들의 반발로 인해 공동검사요구권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소관부처가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3. 개선방안

- 공제회에 대한 소관부처 낙하산 인사관행에 대한 개선과 함께, 소관부처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금융감독원과 소관부처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검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과 소관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에서 공제회 관리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만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02) 788-4582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02) 2156-9836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제도

1. 현황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제도가 2000년 4월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가 시행되었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리스크관리자를 내부통제의 2단계 정도로 인식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지난 2014년 8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준법감시인의 업무강화 방안이 제시되었음

2. 문제점

- 2014년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결과 준법감시인의 경우 과도한 업무·겸직, 낮은 지위 및 잦은 교체 등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일선 임직원의 경우 성과 중심의 경영기조 및 보상체제로 인해 내부통제를 등한시 하는 조직문화가 상존하고 있어서 임직원 스스로도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의 한 분류인 반면,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는 자산의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운용전반에 대한 사항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이 둘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준법감시자의 주요 임무 중 고유재산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의 기준 및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리스크관리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02) 2156-98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과 향후 과제

1. 현황

- 2015년 7월 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며, 향후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 정부가 동 법률 제정안을 2012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여러 의원안들도 함께 논의가 진행되었음¹⁾

2. 법률의 주요 내용

- 첫째, 현재 은행,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되어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 제도를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으로 확대함(법 제32조제1항)

1) 이와 관련된 의원안들은 김기식의원안, 김기준의원안, 이종걸의원안, 김용태의원안, 민병두의원안, 이이재의원안, 김동철의원안 이 있음

- 대주주적격성의 심사대상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며, 심사기간,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음(법 제32조제7항)
- 이와 함께, 심사대상 주주가 대주주적격성을 미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 이행명령,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을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
 - 하지만,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에 대해서 주식처분명령 제도는 별도로 도입하지 않음²⁾
- 둘째, 개별 금융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함(법 제6조)
 - 그동안 사외이사 선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임이사를 결격요건에 포함하는 한편, 상근임직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제한 기간, 소위 냉각기간을 해당 금융회사·계열사는 3년으로, 중요한 거래·협력사는 2년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또한,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해당 금융회사는 6년,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최대 9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셋째,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여 경영목표 및 평가,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을 포함한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함(법 제15조제1항)
 - 아울러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
 - 이밖에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서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13조제1항)³⁾
- 넷째,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내용들을 일부 국내에 수용함
 - 성과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를 부여함(법 제22조제1항)⁴⁾

2) 대주주적격성을 미충족하는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3) 다만,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3조제2항)

- 또한,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성과보수는 일정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법 제22조제3항)⁵⁾
- 다섯째,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업무집행책임자⁶⁾를 새롭게 정의하고(법 제2조제5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법 제2조제2호)
 -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 등)는 이사회에서 임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법 제8조)
-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9조제5항)
 -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3% 초과 보유한 주주는 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됨(법 제19조제7항)

3. 개선방안

- 동 법률이 개별 금융회사에 적합한 자율적인 지배구조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오히려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스스로가 개별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동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다음의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향후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때 규제와 감독을 위한 제도 운영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4)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에는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임원의 보수총액 등이 포함되고,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법 제22조제5항)

5)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단기적인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6)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전무, 상무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함(법 제2조제5호)

- 둘째, 금융감독당국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관여하는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그림자 금융규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행 변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셋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겸업화와 시너지 창출이라는 제도 도입목적은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일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02) 2156-9712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1. 현황

- 지난 2014년 7월부터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로 혁신적인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을 도입함
 - 2015년 5월말 기준 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에게 공급한 기술금융 잔액이 31.7조원에 이를 정도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2015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4년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 중 담보·보증대출이 72%나 차지하는 문제가 지적되는 등 현재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술금융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음

2. 문제점

-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첫째, 무엇보다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금융 현장 확산이라는 목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기술금융 공급을 사실상 압박했다는 비판이 높음
 - 개별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매월 집계하고 이를 공시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마련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한 이후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이를 임직원의 성과보상과 연결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등은 은행들의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외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만 초래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 둘째, 기술금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평가기관(TCB)의 평가인력이 부족하여 기술평가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전적으로 기술금융을 공급하는 데에 한계가 지적됨
 -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력 1인당 평가건수가 도입초기 2014년 3분기 4.7건에서 2015년 1분기 17.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평가서의 부실화도 함께 우려되고 있음
- 셋째, 기술금융은 모험자본의 속성을 가지므로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어 자금을 제공받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업실패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전통적인 상업은행에서 분리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는 은행의 모험자본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서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의 하나는 바로 “기술금융”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임
 - 현행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⁷⁾ 형태로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신용이 부족하거나 경영실적이 없는 벤처기업이 창업이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기술금융을 활용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현재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공급확대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7) 현행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 형태로 은행이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술을 평가한 기술등급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가중합산한 기술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대출기업의 신용상태가 중요함

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투자은행 등과 역할 분담이 병행되어야 기술금융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이러한 방향에서 국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그간 관계기관 공동 또는 개별 부처에서 많은 기술금융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정책들이 있어 이를 재조정 하여 정책집행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⁸⁾
- 둘째, 국내 기술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재 서로 중복되어 있는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기술금융은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이므로 시장중심으로 민간금융이 담당하도록 하되,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을 정책금융이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같이 모태펀드를 이용하여 벤처캐피탈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 기술신용대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신용대출이 중소·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금융 유형의 하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 담보물 처분 등 기술담보제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술담보대출”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02) 2156-9671

8)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많은 기술금융 관련 정책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1. 현황

- 대부업 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상한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임
 - 2014년 4월 2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인하되었고,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34.9% → 29.9%)하는 법률개정안이 계류중임

2. 문제점

-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도 일정 부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의 음성적인 영업행위로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높아지고 이는 대출 승인을 하락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의 감소, 대출심사 기능의 강화 등으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02) 2156-9478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검사기획팀	02) 3145-8264



대체거래소(ATS) 설립



1. 현황

-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하 'ATS')은 정규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장을 통칭함⁹⁾
-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ATS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 ATS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해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 대체거래소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2014년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

2. 문제점

- ATS, 내부주문집행 등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매매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하여 매매체결 부문에서도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임
 -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ATS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의 형편에 맞지 않게 엄격하게 규정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ATS시장 개설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지원한다 하여도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ATS의 독립적 청산 및 시장감시 기구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현재 전 세계적으로 230여개의 ATS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복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전적 정보(pre-trade information)와 사후적 정보(post-trade information)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규제 및 감독 기구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전적 정보와 사후적 정보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 2156-9876

독자신용등급제도의 도입 지연

1. 현황

-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이후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모기업 등의 외부 지원가능을 배제한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의미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Stand-alone rating)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독자신용등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시정·처리요구를 받은바 있음

2.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에 계열그룹 지원 없는 기업의 자체적인 신용도를 최종 등급과 병기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동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2015년 금위위원회 업무계획」에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2015년 상반기에 동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2015.2.)」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3.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는 경제 및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독자신용등급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이후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장위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회사채 시장의 질적 성장, 정책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계획대로 도입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02) 2156-9915



미청구재산 관리



1. 현황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제21조)
 -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동 예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이 원권리자에게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출연통지(제28조)를 하며, 재단은 출연 후 5년까지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후에도 지급 가능함(제29조)

2. 문제점

- 원권리자가 자신의 휴면예금의 존재 및 금액을 인지하기 어려움

- 원권리자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통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는 은행권,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등만 참여하고 있음
- 원권리자에게 환급해주기 위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원권리자가 자신의 휴면예금의 존재 및 금액을 인지하기 용이하게 조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전반의 휴면예금이 조회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업권의 금융기관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 기프트 카드 잔액 등도 일괄적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별로 원권리자에게 휴면예금을 찾아주는 한시성 이벤트를 진행하기는 하나, 보다 통합적이고 상시적인 환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인 휴면예금 관리가 필요함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출연’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휴면예금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이를 이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02) 2156-9471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문제



1. 현황

- 정부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금융규제개혁의 하나로 보험업계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였음¹⁰⁾
-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 문제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됨으로써 업권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당시 은행권의 반발과 금산분리 원칙의 우회 통로로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무산된 바 있음

2. 문제점

- 보험권에서는 그간 보험계약자와의 자금수납 업무 수행 시 은행 계좌와 전산망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부담이 컸으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이러한 수수료부담이 제거되고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 소비자의 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움¹¹⁾
- 반면 은행권에서는 ①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영역에 속하고, ② 보험업의 특성상 자산과 부채의 만기차(듀레이션 갭)로 인해 보험사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¹²⁾, 보험사가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시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③ 보험사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기존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커 보험료 인하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움

10) 관계부처 합동, 「2015년 경제정책방향」, 2014.12.22.

11) 보험권의 이러한 입장은 스스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험금을 보험사 내 고객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운용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접점이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는 계산에 근거하고 있기도 함

12) 보험사가 부담하는 부채는 속성상 듀레이션이 7-8년에 달하는 반면,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은 그 보다 짧은 3-4년에 불과함. 때문에 부채의 만기가 자산에 비해 긴 듀레이션갭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금리하락 시 보험사는 손실위험에 노출됨

3. 개선방안

- 이미 금융투자권 외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대해서도 지급결제가 허용된 상황에서 보험권에만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은행권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보험권에 허용될 지급결제부문이 주로 소액결제부문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권간의 경쟁이 과열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심화될 것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일부에서 우려하는 보험권의 재무적 건전성 약화가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계정분리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02) 788-4582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02) 2156-9836

부실채권 매각제도 정비 필요성

1. 현황

- 현재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음
 - 부실채권 정리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매각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매각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 등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국내은행들은 주로 부실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중에는 저축은행에 매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표 1 | 국내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민간 자산관리회사 (AMC)	금융회사			기타
		저축은행	대부업체	기타 금융회사	
2012년	2,496,574 (87.9)	165,917 (5.8)	102,269 (3.6)	16,942 (0.6)	58,184 (2.1)
2013년	2,363,729 (80.0)	52,720 (1.8)	89,899 (3.0)	153,919 (5.2)	292,576 (9.9)
2014년	1,976,741 (74.1)	353,644 (13.3)	85,686 (3.2)	105,898 (4.0)	145,050 (5.5)

주: 7개 시중은행 매각금액 기준, ()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2. 문제점

- 부실채권 정리가 금융회사의 신속한 채권회수와 건전성 회복이 주된 목적이 되면서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들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AMC)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¹³⁾
- 실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이 지속되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편법으로 연장하는 등 채무자를 가혹하게 추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¹⁴⁾
 - 이러한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채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금융회사가 매각한 부실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채무자의 취약한

13)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채무조정신청을 한 채무자 중 약 54%는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총 채무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함

14)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지나도 원리금 일부를 갚으면 채무자의 지급 의사로 보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추심업체에서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 50%를 면제해준다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속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임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별은행의 내부규정에 반영된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채무자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기준·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면서 파산·면책·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신청 또는 확정 판결이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불공정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02) 2156-9812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식 문제

1. 현황

- 지난 2015년 7월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이 통과되고, 합병기일인 9월 1일 합병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임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핵심적인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식이었음
- 현행 상장법인의 합병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 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은 합병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
 - (i)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ii)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iii)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금액으로 규정함¹⁵⁾

2. 문제점

- 상장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가액의 공정한 산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합병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령과 같이 합병가액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며, 자율적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법률로 직접규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하지만,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단체법적인 행위로서 불공정한 합병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가액 산정에 ‘계약자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현재 자본시장법령에서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규제하고 있는 배경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불공정한 합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합병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합병회사 간에 합병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병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합병회사의 지배주주와 이사회로 볼 수 있으며, 합병에 있어 소수주주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합병 대상회사가 서로 모자회사이거나 계열회사와 같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조건이 지배회사 또는 해당 대기업의 그룹 차원에서 결정될 유인이 있으므로,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현행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함

15)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금액으로 제한됨

3. 개선방안

- 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 합병가액을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산정방식은 기업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물론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경우에도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30% 범위에서 할인·할증한 금액(계열회사 합병 시에는 10% 범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할인·할증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은데,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주식의 시장가치 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지배구조의 강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열사 간 합병으로부터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 평가의견 공개 등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02) 2156-9912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1. 현황

- 2014.7.16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서민정책금융의 통합을 도모하고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서민금융총괄기구(가칭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정책금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관련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법명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금융당국은 지난 6.23일 서민금융 관련 종합 개선방안¹⁶⁾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구체화하였음

2. 문제점

-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을 통합하여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되는데, 각 업무의 성격이 상이함에 따른 충돌이 우려됨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이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게 되면, 금융회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입장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휴면예금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¹⁷⁾ 이후 은행권의 휴면예금 출연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자원조달의 지속성이 우려되며, 창구의 통합으로 오히려 기존보다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3. 개선방안

- 대출기관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는데, 동시에 채무조정업무를 맡게 될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 업무 담당기관을 내부적으로 분리해야 함
 -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상 별도 기관으로 존치시키기는 하나, 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진흥원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양 업무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가 필요함
- 휴면예금에 의존하는 자원확보 구조가 아닌, 자체적으로 순환이 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창구를 통합하여 서민정책금융 수요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근성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16)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5.6.23.

17) 대법원 2012.8.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02) 2156-9471

서민정책금융 이자상한 인하

1. 현황

-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이 있으며, 주로 신용등급 6~10등급의 서민들을 상대로 하여 10%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표 2 】 서민정책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및 금리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출 대상	•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이하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이자율	연 2~4.5%	연 9~12%	연 11~14%	연 8~12%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3.9.11.

2. 문제점

-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하여 0.75%가 낮아졌으나, 서민정책금융상품의 금리에는 영향이 없어 이들의 금리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음
- 이에 서민정책금융상품의 금리상한도 인하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상품 간의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금융당국은 지난 6.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중 하나로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민정책금융상품의 상한금리를 현 12.0% → 10.5%로 1.5%p 인하할 것을 발표하였음
- 기준금리 변동에 맞추어 서민정책금융상품의 상한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상한금리 조정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임
- 채무자 각각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여 추가 인하여력이 있는 경우 금리를 더 인하해주는 등 보다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참고로 현재 금융당국은 서민정책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02) 2156-9471

선박금융 활성화 추진 현황

1. 현황

-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 관련 국제통상마찰 등을 고려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회사」를 대안으로 부산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함
 - 2014년 9월말 부산국제금융센터 내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 관련 조직이 동 센터로 이전함
 - 해운보증회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보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로서 「한국해양보증보험」이 2015년 6월 24일 설립됨

2. 문제점

-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선박구매에 필요한 해운사의 자기자금 부담금을 보완해주는 후순위대출, 지분투자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지만, 현재 자본금은 600억원으로 선박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향후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민간출자금을 포함하여 자본금 규모를 5,5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 확정된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져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한국해양보증보험은 해운사의 선박구매 관련 대출 보증 외에 SOC, 발전, 항공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프로젝트성 금융에 대한 보증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므로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금 확보 여부가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출자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자본 출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재무건전성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02) 2156-976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044) 200-5710

신용정보집중기관에의 보험정보 집중 관련 논란

1. 현황

- 작년 카드사태 이후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연합회 외 업권별 협회 중심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던 개인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신용정보집중기구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 참고로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연합회가 있고,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여신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서 보험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모든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로 간주해 동 기관에 집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문제점

-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과 동 법률 시행령에서는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신용정보이용·제공자(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실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보험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정보가 당시 관련 법령의 불비 상황 하에서 미동의 상태로 수집된 것이며,¹⁸⁾ 일부는 원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¹⁹⁾
 - 때문에 새로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1차적으로 보험정보가 집중되고 보험사 등이 이를 이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뀔 경우, 중복가입 확인 및 비례보상 등 보험금 지급실무와 관련해 보험사 내에 보유가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져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또한 보험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 민감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상 신용정보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음

18) 2003년 9월 이전 구실손보험계약 및 단체보험계약 등을 말함

19)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정보 또는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정보 등이 있을 수 있음

- (기존에 신용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었던) 질병정보가 2009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에서 제외되었던 취지를 고려할 때, 질병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등에 있어 개인의 과거 질병정보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있어 중요한 정보임
- 따라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개념에서 질병정보가 제외될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신청자의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미고지 계약유입 및 보험사기에의 대응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새로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적되는 정보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정보(이하 ‘보험요율정보’)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로부터 필요한 보험요율정보를 제공받아 참조순보험요율²⁰⁾을 산출하고 있음
 - 그런데 보험요율정보를 집적·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인 오류검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1차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가 집적되도록 하는 방식 하에서는 이러한 오류검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3. 개선방안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험정보를 집적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실무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가격이나 지급준비금을 완전히 결정할 수 없는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율산출기관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이질적인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집중·보관함으로써 인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킹의 타겟이 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참조순보험요율은 개별 보험사의 입장에서 경험통계가 부족한 보험상품의 보험요율 결정, 표준책임준비금 산출, 보험회사별 상품가격 비교기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

-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실무의 특성 상 가입심사-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 본사 차원에서 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로 인해 보험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02) 788-4582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서민금융과	02) 2156-9476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1. 현황

- 신용카드 회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포인트 적립 조건을 달성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포인트에 상응하는 가격의 물품 또는 현금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신용카드 회원은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²¹⁾에서 자신의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으며,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2. 문제점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약관에 포인트 적립기간을 정해둠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약관이나 부속명세서 등에 고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회원이 이를 일일이 챙겨 확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임
- 상당수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잔액이 최소 1,0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포인트 기부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는 포인트

21) <http://www.cardpoint.or.kr>

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활용방안이 다양하지는 않음

3. 개선방안

- 신용카드 회원에게 잔여 포인트를 적극 고지하여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휴면예금과 같이 미청구재산 범위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멸시효가 지난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의 재산이므로 이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카드 회원의 사용규모에 따라 회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가서비스이므로 카드 회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차선적으로 사회 정책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02) 2156-9865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급심사 강화 논의

1. 현황

-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판매를 크게 확대해 옴
 - 실손의료보험이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통원 시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태의 의료비용보험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장함
-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

율과 보험료 급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최소본인부담금 설정, 보험상품의 단순·표준화, 청약자에 대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해 왔고, 2012년부터는 보험사로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사가 비급여 청구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²²⁾

2. 문제점

-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료업계에서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의료업계에서는 ① 실손보험의 문제가 보험사들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기인한 것이고, ②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적 영역에 속한 실손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공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위탁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삭감 우려로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손해사정업계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손해사정업계에서는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거 병력(기왕증)을 가진 보험계약자에 대해 사고기여도(사고로 질병이 악화된 부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빠져나가 소비자들이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함

3. 개선방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역량을 가지고 있고, 비급여부분에 대한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급여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22)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2012.8.30.

-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1차적으로 환자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금의 ‘후불제’ 대신,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심사해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구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각각 통지하고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직불제’ 형태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업계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비급여 삭감과 관련해서는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02) 788-4582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02) 2156-9836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주택금융시장 교란 문제** 

1. 현황

- 금년 3월, 금융위원회는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가진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연리 2%대의 장기·고정·저리의 원리금균등상환대출상품인 일명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였음
 -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저리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성 모기지 상품으로, 판매은행들이 1차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MBS를 발행하면, 이 MBS를 다시 판매은행들이 매입하는 형태임

- 그런데 최초 상품출시 후 3일 만에 1차 공급분인 20조원이 모두 소진되고, 뒤 이어 공급된 20조원 중에서 다시 14.1조원이 공급되는 등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

2. 문제점

- 단기간에 약 34조원의 기존 (상대적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었음²³⁾
 - ①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2%p 금리가 낮은 MBS를 매입하여야 하고, ② 일단 매입한 MBS는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③ 안심전환대출로의 전환 시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취급 은행의 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수익감소분이 최대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 중 5년물 이상에 대해서는 콜옵션(발행자가 되살 수 있는 권리)이 추가되어 있어, 이를 매입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상이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변동금리대출 또는 거치기간에 속한 대출로 한정됨으로써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들과 신규 대출자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즉 기존에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해 고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²⁴⁾
 - 또한 상대적으로 큰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저축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이용기구의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였음²⁵⁾
- 단기간에 다량의 MBS 물량 공급으로 채권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됨²⁶⁾
 - MBS 발행을 앞두고 채권수급이 교란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MBS 발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역마진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23) 월요신문, “가계부채 해소 취지 ‘안심전환대출’, 세 가지 문제점”, 2015.3.3.

24) 노컷뉴스, “안심전환대출? 서민은 뒤통수, 은행은 속알이”, 2015.3.25.

25) 서울경제, “[파이낸셜 포커스] 헛다리 짚은 안심전환대출”, 2015.5.27.

26) 미디어잇, “하나금융연구소 ‘안심전환대출 보완책 마련 시급’”, 2015.5.7.

3. 개선방안

-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단기성 상품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관치금융의 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따라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의 수립과 함께 시장친화적인 방식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령 전체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의 비중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각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표를 마련하여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용 필요성과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대출 상담 시 향후 예상되는 금리추이에 따른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액 부담 변화분을 소비자에게 비교·제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영업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02) 788-4582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02) 2156-9718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관련 논의

1. 현황

-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에「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해서 고를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의 설립을 목표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문제점

- 금융위원회 등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대면 위주의 기존 판매채널이 가진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상품내용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표준화의 어려움, 보험상품이 가진 장기계약성으로 인한 재무설계 서비스의 병행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도입논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보험상품 구입 채널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보험수퍼마켓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경우 소비자들이 기존 대면 위주의 판매채널 하에서 비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보험수퍼마켓이 제대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가진 재무적 니즈와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매칭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임
- 아울러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의 플랫폼을 최대한 소비자 친화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보험수퍼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을 기존의 판매채널에 대한 대안적 판매채널로 인식, 온라인 소비자 접점을 확대시키길 유인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02) 788-4582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02) 2156-9836

우리나라 금융교육 현황

1.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각각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방문교육과 현장체험교육 그리고 현장 경제교육, 방문강좌를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문제점

-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는 금융교육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컨트롤 타워를 설립·지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교육주체별로 금융교육 관련 부서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금융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음
- 2010년 7월 기획재정부는 금융교육을 금융위원회 과제로 선정하되, 경제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전략 부재, 각 금융교육 수행 주체 간 역할조정 기능 부족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

3. 개선방안

- 소비자들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이러한 틀 내에서 연도별로 금융교육 종합계획(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유관 부처 및 기관들이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과	02) 2156-9777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02) 3145-5961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1. 현황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함
 - 2015년 6월 15일 현재 899개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였음
-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2년 30건, 2013년 73건, 201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2. 문제점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신고제로 되어있어 피해자의 고발이 없는 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음
 - 현행 법률하에서는 결국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음
- 투자상담 매체가 유선,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다고 해서 실제 영업행위가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증권투자 강연회 등의 명목으로 회원모집은 계속될 것이며 인터넷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비법 전수’ 등의 상담행위 역시 근절되기 어려울 것임
 - 현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한 회원모집과 개별 상담이 성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음성적인 투자상담을 오히려 적발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임

3. 개선방안

- 일간경제지에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과장광고 및 특별회원 모집 광고를 제한함
 - 현행 주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주로 신문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투자설명회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들 중 일부를 특별회원(VIP 회원) 명목으로 고액의 회비를 받고 있음
 - 주요 강연회에 모니터 요원을 참석시켜 위법행위가 있는지 감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강연회 광고에 고발절차 등을 병행하여 게재 하거나 동일한 지면에 피해에 따른 고발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주부나 은퇴자 계층이 주된 피해자로서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한계가 있음
 - 투자 강연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에 따른 구제절차 및 고발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건전한 주식투자 정보 제공을 활성화함
 -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주부나 은퇴자들로서 이들이 주식투자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임
 - 주식투자자들에게 대한 협회 차원에서의 강연회를 활성화 한다면 건전한 주식투자에 기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 2156-9870



은행산업의 수익성 부진



1. 현황

- 국내은행의 수익성 지표중 하나인 ROA는 '14년 1월 ~ 9월중 0.39%로, 최근 10년('04년~'13년) 평균(0.65%)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
 - 국내은행들의 자기자본순이익률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4%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 7.17%로 하락한 이후 2013년까지 9%를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69%로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3.41%) 보다도 낮았다, 2014년 3분기에 들어서서 5.20%로 회복되었음²⁷⁾
-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8년 6.5%, 2011년 6.4%에서 2013년 말 현재 5.5%로 하락하였음²⁸⁾

2. 문제점

-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의 하락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가장 관련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장 크겠으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가격제한 정책(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출금리, 은행수수료 등), 제도강화(설명 의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는 시각도 있음²⁹⁾

3. 개선방안

-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을 규제산업 및 리스크 산업으로 인식하여 사고의 방지에만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창출 산업인 은행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³⁰⁾

27)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14.3분기중 영업실적(잠정)」, 2014.11.10.

28)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정부, 금융권 인력조정에 대응, 맞춤형 고용지원대책 추진」, 2014.9.2., 보도자료

29) 서병호, 「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은행부문의 규제·감독시스템 개혁」, 2014.12.8.

30) 서병호, 「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은행부문의 규제·감독시스템 개혁」, 2014.12.8.

- 한편, 은행의 비이자이익이 10% 상승할 경우 약 7%의 부가가치 상승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³¹⁾등을 고려할 경우, 은행권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비이자수익 창출노력을 독려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 금융업계가 수익성 감소에 따라 감원·점포폐쇄 등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몸집 줄이기보다는 신성장 동력 마련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³²⁾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02) 788-4581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02) 2156-9819

은행의 해외진출 실적 부진

1. 현황

- 고령화 및 저금리, 저성장 등 열악한 성장환경에 처한 국내 은행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은행의 해외진출을 권장하고 있음
-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금융감독원, '13.5),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금융위원회, '13.11), 「금융규제 개혁방안」(금융위원회, '14.7),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금융위원회, '15.7) 등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음

2. 문제점

-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해 여전히 국제화 수준이 낮고, Profit센터로서의

31) 김세직, 김영식, 권준모, 홍승기, 「한국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보고서』, 장은공익재단, 2014.2.
 32) 최남영, 「올해에도 금융권에 구조조정 쓰나미 올 듯」, 2015.3.12, 건설경제

역할도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³³⁾

- 국제화 수준의 지표인 해외점포 자산비중('14년 말)은 국민은행 1.9%, 우리은행 5.8%, 외환은행 15.6% 등으로 JPMorgan 29.1%('13년 말), Mizuho 44%('13년 말) 등 해외 우수은행과 격차가 큼
- 또한 진출 대상국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동일국가 내에서 우리나라 은행 간 경쟁이 과열되고 특정국가에 위험이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된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지적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해외진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내은행들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독자적인 강점을 발굴하지 않고 국내영업 방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해외에 진출하여 적극적 해외수익 발굴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음
 - 우리나라의 은행장 인사는 실적에 연동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며³⁴⁾ 정치권의 영향과 분위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실적향상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보다는 연임을 위한 정치활동에만 관심을 갖는 구조가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있음
 - 조직의 필요에 의해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CEO로 선임되지 않고 정치적 배경을 이용하여 선임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내실보다는 외형성장이나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³⁵⁾, 그 결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기 보다는 연임시나리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³⁶⁾,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02) 788-4581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02) 2156-9792

3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2015.7.16.

34) 2014.10.14, 「KB금융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토론 내용

35) 최영주, 「금융지주회사 CEO리스크의 법적 검토」,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법제의 대응』, 한국금융법학회, 2014.11.7., p25.

36) 윤홍우, 「시스템을 짓누르는 '정치금융'」, 서울경제, 2014.9.25.



의무공개매수제도



1. 현황

- 의무공개매수(mandatory bids)란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control)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함
 - 지배주식의 양수도에 있어서 형성되는 지배권프리미엄이 공개매수라는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소액주주에게도 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소액주주들이 매도압력(pressure to tender)을 받지 않으므로 기업가치 파괴적인 적대적 기업인수(hostile takeover)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2. 문제점

- 제도 하에서는 지배주식의 매매가 어렵게 되므로, 실제로는 소수주주가 프리미엄의 분배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염려도 있음
 - 본래적 의미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법정책적으로도 M&A의 활성화를 저해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억제하고,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여 지배권을 취득한 지배주주에게 지배권의 영속화를 보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주식의 소유분산을 통한 경영감시강화에 의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피하기 어렵고, 상장회사의 폐쇄기업화를 촉진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소수주주의 보호정신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
- 의무공개매수는 적대적 기업인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업의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경제와 기업의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각각 다름
 -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확보는 10% 또는 20% 남짓한 지분으로도 가능하므로 이 제도가 M&A를 억제하는 기능은 크지 않음

3. 개선방안

- 실제 경영의 투명성이나 소액주주들의 이익보호 차원에서라면 의무공개매수제도 외에도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적대적 M&A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경영권 인수를 부담스럽게 하는 조건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강제(신인의무의 확대, 공정가격법, 자산 처분 또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하거나 발생이익의 반환(주식 매각이익의 반환) 등의 방법으로도 달성 가능한 전략임
- 우리나라와 같이 부분매수(partial takeover)를 통한 경영권 획득이 일반화되어 있어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배대주주의 사적인 편익 추구 유인을 높여 소액주주간의 갈등관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의무공개매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 2156-9870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현안

1. 현황

- 2015년 6월 18일 정부는 IT를 활용하여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함
 -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으나, 2001년에는 금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상 제약 등으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건전성 우려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음

2. 주요 내용

-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예금과 대출 등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첫째, ICT 기업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함(※ 「은행법」 개정 필요사항)
 -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를 초과하여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보유한도를 50%까지 완화할 예정임
 - 최저자본금도 현행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임
 - 둘째,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함
 -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적용하고, 주요 건전성 기준 중 일부 규제는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함³⁷⁾
 - 셋째,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의 제약요인이었던 대면(face-to-face)에 의한 실명확인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복수의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함

3. 개선방안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 및 성공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인가를 하고, 금산분리 완화는 추후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금산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금산분리는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로 적용되어 왔음
- 하지만,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금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형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37)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Basel III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asel I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예: 2조원이상, 예대율규제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 Basel III 적용을 검토할 예정임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국회에서 금산 분리 완화 수준, 부작용 방지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된 규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02) 2156-9812

자동차리스업 현황

1. 현황

- 리스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로서, 애초 건설기계 장비 등을 위주로 운용되어 오다가 자동차리스 활성화와 더불어 리스 시장이 확대되어 왔음
 - 자동차리스 시장의 실행액은 2010년 59,280억원에서 2014년 79,288억원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전체 리스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자동차리스업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도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마련한 개별약관의 적용을 받게 됨
- 자동차리스업과 유사한 제도로 자동차렌탈업이 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렌탈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으로 자동차리스업과 업자의 요건, 비용처리, 대상 자동차품목

- 등이 상이하나 양자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야기함
- 소비자들도 특별히 리스와 렌탈을 명백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이나 공급자의 제안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자동차리스업자와 리스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며,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리스와 렌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큰 차이가 없다면 양자를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정책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02) 2156-9865



제3보험에서의 손해사정의무 면제 논란



1. 현황

- 작년 초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제3보험³⁸⁾에 대해 손해사정³⁹⁾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생명보험업계가 중심이 된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는 ①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8)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보험을 말함.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제3보험을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음

39)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하는데, 197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증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을 제외한 전 보험종목에 대해 전문직업인인 손해사정사에 의한 손해사정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약관의 해석이 아닌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중심이고, ②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제3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실무에 비추어 손해사정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제시함

-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 작년 12월 31일에는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제3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무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임

2. 문제점

- 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생명보험사가 취급한 제3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됨⁴⁰⁾
 - 가령 제3보험상품의 하나인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⁴¹⁾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만 보장하고 임의비급여⁴²⁾는 보장하지 않는데,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만으로는 환자가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또는 임의비급여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함
 -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⁴³⁾
- 금융위원회 역시 제3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업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⁴⁴⁾
 -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기록 및 치료사실 확인 등을 위한 방문·서면 조사가 필요⁴⁵⁾하고, 질병·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장애등급이나 질병판정이 뒤바뀌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0)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29 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5.3.

4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비는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본인부담), 비급여, 임의비급여로 구분됨

42)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 등을 말함

43)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의료비 중 임의비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 보험금 심사 시 이를 구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44)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29 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5.3.

45)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등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지식과 협상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의 입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3의 전문가의 역할이 개입될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계약자와 결탁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3보험의 보험금 청구항목에 대한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평가체계(가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마련을 통해 손해사정의무 부과와 관련한 부작용을 함께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02) 788-4582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02) 2156-9836

주식 공매도 규제

1. 현황

- 공매도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함
-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됨
 - 공매도가 없을 경우 주식의 가격은 악재정보에 대한 반응은 저조한 반면, 호재정보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됨
 -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본질가치에서 벗어나거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실행되어 정보효율성을 높이게 됨

2. 문제점

- 공모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가하락을 가속화하고 가격변동을 확대하는 역기능이 있음
- 주가 하락과 맞물려 공모도가 크게 나타날 경우,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은 있음
- 특히 거대한 외부충격으로 시장의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모도는 증권가격의 하락속도와 폭을 가속화시켜 충격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음
 - 특정한 상황을 이용하여 주가 하락을 의도하는 세력에 의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음

3. 개선방안

- 실제 공모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모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도 세력들의 문제로, 대부분 공모도와 연계한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 공모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사항으로 간주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모도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운용패턴의 하나로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규정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불법과 연계되는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 2156-9870



카드론 실적 현황



1. 현황

- 최근 5년간 카드론 실적이 카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23.2%, 2012년 24.8%, 2013년 29.4%, 2014년 32.4%이고, 2015년 1분기는 34.7%로 상승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 문제점

-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수익보전을 위해 영업 전략을 카드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히, 카드론은 잠재적 부실 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규모를 키워 나갈수록 카드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카드론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카드론 취급액 증가는 현금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낮은 카드론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카드사들의 프로모션 강화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예진 02) 788-4586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02) 2156-947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기획팀	02) 3145-8801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1. 현황

- 기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두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2014년초 대규모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고 등 각종 신용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신용정보를 한군데에 집중시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016.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2015.7.13일)하였음

2. 문제점

-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게 될 경우 기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으나,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더 나은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임
 - 새로운 기구 설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며, 금융회사로부터 설립비용, 운용비용을 지원받게 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과제임
 - 또한,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의 계기가 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고는 개별 카드사의 정보관리 문제이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가 아니므로 기존 구조를 변형하는 명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음
 -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 즉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나,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기존 신용정보 담당 인력 및 구조와의 조화, 금융회사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 관리하게 될 경우,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여러 기관에 정보가 흩어져있는 경우보다 사고의 규모나 심각성이 커지게 되므로, 통합기구 설립의 목적(개인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안)이 달성될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02) 2156-9773



투자은행(IB) 육성



1. 현황

- 투자은행업무는 증권인수 등 직접금융을 담당하고,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의미함
 - 이는 간접금융, 예대마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은행과 구분됨
 - 특히 헤지펀드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자산운용업무, 모험자본의 공급, 신용공여 등 투자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투자은행의 기준이 됨
- 2013년「자본시장법」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증권회사의 투자은행업무 관련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음
 - 일반 금융투자회사에 비하여 증권의 대여·중개·주선 및 금전의 용자,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이나 관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명문화하면서 투자은행의 업무 중 헤지펀드에 대한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음

2. 문제점

- 개정 「자본시장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증권에 국한시키고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담중개서비스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그러나 기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M&A 중개 업무 등은 대주주와의 거래로 허용되고 증권 관련 신용공여를 제외한 기업신용공여제도에 대한 한도가 제한되지 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관련 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을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제한하게 됨
- 금융투자업의 산업집중도를 높일 경우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지배주주가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시장을 독점할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증권 외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신용공여 한도를 다소 완화하여 일정 부분은 전담중개서비스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환경상 기업집단이 많은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재벌과 계열사 간의 자금공여의 문제가 있으며, 투자은행업무의 위험이 다른 실물부문의 계열사의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확대는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02) 2156-9710



하이브리드 채권 도입



1. 현황

- 하이브리드채권은 주식과 부채의 중간 성격으로 만기가 없고 은행이 청산될 때까지 상환 의무가 없는 은행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주로 영구채권이 하이브리드채권의 수단으로 사용됨
 - 영구채권(perpetual bond, 이하 ‘영구채’)은 만기가 없어 원금 상환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에 법적으로는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만기가 없는 영구채의 형태로 발행되어 실질측면에서는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음
-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사실상 후순위채 성격에 가까운 자금을 영구채로 조달하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지기보다 자본이 확충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효과(부채비율 하락)는 2배나 확대될 수 있음

2. 문제점

- 금융당국은 사실상 ‘자본’으로 결론내린 회계기준과 달리 영구채를 실질적인 부채로 분류, 100%의 신용환산율(CCF)을 적용키로 하였음
 - 금융당국이 영구채(하이브리드채·신종자본증권)를 사실상 은행들의 부채로 100% 반영하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조선, 해운 기업들의 경우는 영구채의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공기업 경영평가단이 영구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기업에서도 영구채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입장에서도 안정된 자금조달 경로로 영구채의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매력적인 요인이나 오히려 재무부담을 높이는 요건이 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기업의 경영사항을 알려주는 기본 지표인 재무제표의 회계기준과 실제 금융당국에서의 신용환산의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이 신용공여를 일종의 확정 채무로 판단,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키로 한 것은 내·외규상 신용공여는 최대 5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영구채에 대해서만 10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임
- 영구채의 자기자본요건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 이를 위하여 우선 Basel의 은행하이브리드채권의 자기자본 인정요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02) 788-4583
주제와 관련된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 2156-9878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02) 3145-7981